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 약관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 조 【청약의 철회】
- 제 3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제 5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6 조 【계약의 무효】
- 제 7 조 【계약내용의 변경】
-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9 조 【계약의 소멸】
- 제 10 조 【보험나이】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11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제 12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제 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 16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 1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 18 조 【해약환급금】
- 제 19 조 【배당금의 지급】
- 제 20 조 【소멸시효】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제 21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제 22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제 23 조 【펀드의 유형】
- 제 24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제 25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제 26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제 27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제 28 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 29 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 5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 30 조 【계약전 알릴의무】
- 제 31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 32 조 【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제 6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 33 조 【주소변경 통지】
- 제 34 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 35 조 【대표자의 지정】
- 제 3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 37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 38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 3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 40 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 41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제 42 조 【보험계약대출】

제 7 관 분쟁조정 등

- 제 43 조 【분쟁의 조정】
- 제 44 조 【관할법원】
- 제 45 조 【약관의 해석】
- 제 4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 47 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제 48 조 【결산사항의 통지】
- 제 4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50 조 【준거법】

제 51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 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제 2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대 2 개의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존 연금 지급 형태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정액형	10 년 보증, 20 년 보증
		체증형(5%, 10%)	10 년 보증, 20 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5 년, 7 년, 10 년, 15 년, 20 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5 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④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 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7 년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단, 추가납입은 매회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의 실적연금형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 5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7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에 한함)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 4 항, 제 4 조(용어의 정의) 제 7 호 및 제 9 호, 제 1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1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 1 항 제 2 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제 1 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까지 최소 7 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나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 중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및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8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확정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 지급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 6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0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제 25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 3 항에 의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4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2 조(청약의 철회) 제 2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 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3 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1 항, 제 9 조(계약의 소멸),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34 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 3 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1 항, 제 9 조(계약의 소멸),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34 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의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의 생존연금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항 제 1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1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제 2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hana.com)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18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 1 보험기간 및 제 2 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제 1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제 2 보험기간의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 후 경과기간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 년 경과 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은 제 17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0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 21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 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가입 후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 년 경과 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④ 제 2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22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

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3.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4. 안정성장형 / 안정성장형Ⅱ :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5.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6. 실크로드혼합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 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 개월, 12 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 개월, 12 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 개월, 12 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 25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 23 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가 2 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4 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 ③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4 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 시에는 10 만원이상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 3 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 29 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 5 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제 24 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 의해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 5 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5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 5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⑧ 회사는 제 4 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 5 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제 26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 27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8 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28 조 제 2 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 86 조 제 2 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 89 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 100 조 제 5 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 149 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 25 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5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30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 30 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 1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 30 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 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33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4 조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 2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1 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35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3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7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지급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8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37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의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 31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 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0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41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제 1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 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 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출 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 원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인출수수료를 부가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 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제 4 조(용어의 정의) 제 7 호 및 제 9 호, 제 7 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 3 항, 제 1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제 42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및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을 한 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상환일 기준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④ 제 2 보험기간 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만, 실적연금형은 제 3 항에 준하여 제 1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용합니다.

제 7 관 분쟁조정 등

제 4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4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7 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 4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50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51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 13 조 제 1 호)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전(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기본보험료(일시납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2. 생존연금 (약관 제 13 조 제 2 호)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이후(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고,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이후(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지급금액	단, 사망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제2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라. 실적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회 보험계약해당일
지급 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 좌수를 분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1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제2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단,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제2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생존연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2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 년도 연금액과 동일 또는 체증률로 체증한 금액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액형이라 하더라도 직전 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체증형인 경우도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로 체증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시이율」(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경과 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6.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부리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7.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10회(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10회(또는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8.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7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9. 실적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잔여 지급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2. 제2보험기간 생존연금 지급형태 중 실적배당형을 선택할 경우 제2보험기간에도 제1보험기간에 운용되는 특별계정(펀드)에서 계속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운용하여 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분할하여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begin{aligned} & \text{연금지급액(납입후 유지비 포함)} \\ & = (\text{연금지급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 / \text{잔여연금지급횟수}) \\ &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기준가} \end{aligned}$$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시점 현재 1 억좌를 보유하고, 5 년간 매월 단위 지급을 신청한 경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
보유좌수	100,000,000	98,333,334	96,666,668	95,000,002	93,333,336	...
잔여연금 지급횟수	60	59	58	57	56	...
1000좌당 기준가예시	1,100	950	1,050	1,100	1,200	...
연금 지급액	1,824,212	1,575,455	1,741,293	1,824,212	1,999,049	...

* 상기 연금액 예시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가, 보유좌수, 연금지급액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연금 지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의 연금지급액은 납입후 유지비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예시한 것 입니다.

13.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14.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6. 실적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 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일반계정에서 부리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합니다. 단, 매년 계약 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제2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7. 계약자는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3항의 생존연금의 지급형태 중 최대 2개의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9.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가지 연금 형태에 최소 30% 이상의 계약자적립액을 분할 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 장애

(주) () 안은 제 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2-1 호, 2003.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5 차 개정 이후 위 1 및 2 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 38 조 제 2 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 13 조 제 1 호)

적립기간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생존연금(약관 제 13 조 제 2 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적립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기간
	예정이율의 50%	1%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약환급금(약관 제 18 조 제 1 항)

적립기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기간
	예정이율의 50%	1%

적립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상기 예정이율은 제1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예정이율」, 제2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